농협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: 2012-393

심의일 : 2012. 6. 4.

NH직장인월복리적금 특약

제1조(약관의 적용)

『NH직장인월복리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.)』 거래에는 이 특약을 우선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적립식예금약관, 채움적금특약을 적용합니다.

제2조(가입대상)

-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개인으로 합니다.
- 단, 개인사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제3조(가입기간)

이 예금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(가입금액)

이 예금의 계좌당 초입금 및 매회 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이며, 1인당 분기별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단, 계약기간 3/4 경과 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 적립누계액의

1/2 이내로 합니다.

제5조(적용이율)

이 예금의 이율은 예금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을 월복리로 적용합니다.

제6조(우대이율)

- ① 이 예금에 가입한 고객 중 「<u>가입기간 동안 1회 이상 당행으로</u>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한 고객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을 제5조의 이율에 추가하여 적용합니다.
 - 1. 가입기간 중 "3개월 이상" 당행에 급여이체시: 0.3%p
 - 2. 이 예금의 <u>만기일 전월말 기준으로</u>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(청약저축 포함) 또는 적립식펀드 중 1개 이상 가입시 : 0.2%p
 - 3. 이 예금의 <u>가입일이 속한 해당월부터 만기일 전월말까지</u> 당행 요구불계좌를 통한 NH채움 신용·체크카드(농협은행 발급분에 한함)의 결제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: 0.2%p
- ② 이 예금을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할 경우, 0.1%p의 우대이율을 추가로 적용합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만 제공합니다.

제7조(중도해지이율)

만기일전에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입금 건별로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**단리 계산한 이자**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8조(만기후이율)

만기일 후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**단리 계산한 이자**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